

청소년 음주예방정책의 최근동향

김광기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최근 음주로 인한 청소년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등 청소년 음주폐해가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고 음주시작 연령이 빨라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 음주예방정책을 점검해보고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알코올 폐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려는 사회적 대응들이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하여 여러 국가에서 강력해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청소년 음주예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는 제도보완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최근의 건강투자에 대한 정부의 관심증대는 이러한 요구들과 개념적으로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청소년 음주예방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청소년 음주예방에 관한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해 알코올 정책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과 사회 전체 음주폐해 감소와 예방의 중요한 대상으로서의 청소년 음주예방 정책을 효과성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청소년 음주예방의 근본적인 원리와 목표는 WHO EU 사무소에서 발표한 청소년 음주예방선언(Declaration on young people and alcohol)에 잘 담겨져 있다. 청소년을 음주폐해와 음주를 권하는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하여 교육홍보, 주류이용 및 주류광고로부터 보호, 음주 없는 환경조성 및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들을 마련하여 수행할 것을 담고 있다. 주류에 대한 수요차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교육홍보위주의 정책대안들보다는 수요차단과 함께 청소년에게 주류가 공급되는 것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음주는 청소년들에게 불법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담배나 다른 약물들에 비해 예방프로그램들의 효과나 효과의 지속성이 크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요구되고 있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음주예방정책대안들은 주류구매연령제한, 교육홍보, 주류광고제한, 주류용기에 경고문구 부착, 음주운전금지 등이 있다. 이러한 대안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의 음주시작연령은 빨라지고 있으며 음주하는 청소년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한 정책대안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주류구매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이 있지만 단속이 따르지 않는 법은 아무 의미가 없는 바, 단속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홍보를 위해서는 효과성이 확보된 청소년 음주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각급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청소년 음주예방프로그램조차도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되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주류광고 및 마케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공중파 방송에서의 주류광고를 밤 10시이후로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방송프로그램은 밤 10시이후에 방영되고 있는 점, 음주장면이 지나치게 많은 TV 드라마와 영화 등은 청소년을 주류광고와 마케팅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로서는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다. 주류용기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을 작은 글씨로 표기하고 있는 경고문구는 일반적으로 효과성이 없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자동차를 거의 운전하지 않으며 그 보다는 오토바이를 더 운전한다는 현실을 고려한 청소년 음주운전 제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음주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해서는 이를 제도의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관(institute)이나 부처 간의 협력기구(interministrial agency)가 마련되어야 한다. 주류업계를 비롯한 사회 여러 분야(sector)가 관련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알코올 정책이고 청소년 음주행동은 변화와 변화의 지속성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 음주예방정책을 계획, 수행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은 청소년 음주예방정책의 “두뇌”를 마련하는 것이다.

음주를 해롭게 하는 것(harmful use of alcohol)에서 초래되는 다양한 음주폐해를 감소 예방하는 것이 세계보건기구의 중요한 과제로 규정되어 담배규제국제협약과 같은 알코올규제국제협약이 거론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주도적 노력과 다른 회원국들의 노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특별히 미국은 2006년 12월 청소년음주예

방 연방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각 주(state)마다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가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는 것은 청소년 음주에 관한 국가와 사회 전체의 관심과 헌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주의 긍정적인 기능을 강조하며 음주를 조장하는 문화를 가진 우리 사회에서는 음주로 인해 폐해를 인정하고 문제로 규정하는 것에 매우 인색하다. 음주폐해를 축소하려는 사회적 경향은 정책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건강투자라는 국민 건강증진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현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청소년 음주예방 정책을 건강투자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정부의 인식 변화와 함께 청소년 음주폐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을 음주폐해와 음주권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현 제도의 한계를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계의 인식전환과 헌신이 어떤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